

정기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10:00-11:40
- 개최장소 : 켄싱턴 호텔 여의도 상하오
- 총이사수 : 4명
- 출석이사 : 박성경 이사, 이태웅 이사, 원치운 이사, 정재철 이사
- 출석감사 : 이천화 감사 이상 1명
- 회의내용

I.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 박성경 이사장 : 참석하신 임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정재철 이사에게 성원보고를 하도록 하다.
- ▶ 정재철 이사 : 이사 총 6명 중 이사 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정기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2019년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II. 전차 회의록 보고

- ▶ 박성경 이사장 : 정재철 이사에게 전차회의 보고를 하도록 하다.
- ▶ 정재철 이사 : 2018년 11월 23일(금) 11:00~12:40에 진행된 임시이사회는 이사 총 여섯 분 중 여섯 분과, 감사 한 분이 참석하였으며, 안건으로는
 1. 이랜드재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이랜드재단 201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3. 이랜드클리닉 장비구입 및 리모델링(안) 심의의 건총 3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고 재단 운영 및 사업에 반영되었음을 보고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전차회의록 보고 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 원치운 이사 : 전차회의 보고사항에 대해 동의하다.
- ▶ 이태웅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하셨기에「전차회의록」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
-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 박성경 이사장: 전차회의록이 관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Ⅲ. 감사보고

- ▶ 박성경 이사장 : 이천화 감사에게 이랜드재단 결산에 따른 감사보고를 하도록 하다.
- ▶ 이천화 감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의거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비영리 기관의 회계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요한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기타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하다.
- ▶ 이태용 이사 : 직접사업비용의 비용이 정당성 부분에 대하여 묻다
- ▶ 정재철 이사 : 법인 조직정비로 사업이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특화되었다고 말하며, 법적 기준 준수와 운영비용을 현실화했다고 답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재단 감사보고에 대한 이사들의 추가 의견을 묻다.
- ▶ 이태용 이사 : 감사보고 보고사항에 대해 동의하다.
- ▶ 원치윤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2018년 이랜드재단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Ⅳ. 2018년 이랜드재단 성과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보고

-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재단과 클리닉 각 2019년 성과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다.
- ▶ 김옥 국장 : 2018년 이랜드재단의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해 보고하다.
보고내용 ① 2018년 이랜드재단 주요성과 보고
② 2018년 사업 결과보고
③ 2019년 이랜드재단 경영계획
④ 2019년 세부 사업내용
- ▶ 강준호 원장 : 2018년 이랜드클리닉의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해 보고하다.
보고내용 ① 2018 이랜드클리닉 주요성과 보고
② 2018년 클리닉 사회공헌활동보고
③ 2019년 사업 계획보고
- ▶ 정재철 이사 : 이랜드클리닉 추가 장비구입 계획을 묻다.
- ▶ 강준호 원장 : 금년도 하반기에 노후 장비 교체 예정이라고 답하며 향후 사옥 이전 계획에 따라 인테리어와 장비구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하다.
- ▶ 이태용 이사 : 현재 클리닉 의료장비와 검진가능한 항목에 대해 묻다.

- ▶ 강준호 원장 : 의료장비별 검진 가능한 항목에 대해 답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보고된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 이태웅 이사 :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 보고사항에 대해 동의하다.
- ▶ 원치윤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
-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 박성경 이사장: 2018년 성과보고와 2019년 경영계획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V. 회의 안건 심의·의결

<제 1호 의안>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안) 심의의 건

- ▶ 박성경 이사장 : 정재철 이사에게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재철 이사 :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다.
- ▶ 이태웅 이사 : 결산서 상 이월금 비중이 높은 사유를 묻다.
- ▶ 정재철 이사 : 이월금 비중이 높은 사유를 답하다.
- ▶ 김옥 국장 : 전년도 사업결과와 함께 사업부 지출이 적은 사유를 답하며 향후 2019년에는 공적네트워크를 통한 사업확대로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법인 자체 사업 외에 민간, 공공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다.
- ▶ 정재철 이사 : 네트워크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각지대 대상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소통채널 마련하겠다고 답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안)에 대한 이사들의 추가 의견을 묻다.
- ▶ 이태웅 이사 :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안)에 대해 동의하다.
- ▶ 원치윤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
-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박성경 이사장: 이랜드재단 2018년 결산 및 사업결과(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하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2호 의안>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

▶ 박성경 이사장 :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정재철 이사 :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9년 기부금에 대한 기본재산예외 승인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박성경 이사장 :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천화 감사 :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라 말하다.

▶ 원치윤 이사 :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에 대해 동의하다.

▶ 이태웅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박성경 이사장: 이랜드재단 2019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하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3호 의안>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안) 심의의 건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재단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정재철 이사 : 이랜드정관 중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의 조항내용 변경(안)을 설명하다.

[정관 변경 신규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장 1인 2. 이사 6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u>1.이사6인(이사장, 대표이사 각 포함)</u> 2.감사2인
제12조(상임이사) ①이사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중에서 1명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 법인에 상임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기타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상임이사) (삭제)
제13조(임원의 선임)①이사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임원의 선임)(조문번호변경) ① <u>대표이사, 이사, 감사</u> 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 <u>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u>
제19조(신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u>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u>

-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 이태웅 이사 :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타 재단과 NGO의 사례를 묻다.
- ▶ 정재철 상임이사 : 타 재단과 NGO의 사례를 답하다.
- ▶ 이천화 감사 :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의 구분이 필요하며 현 변경(안)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말하다.
- ▶ 원치윤 이사 :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해 동의하다
- ▶ 이태웅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이랜드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
-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 박성경 이사장: 이랜드재단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4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 및 국장 선임의 건

▶ 박성경 이사장 : 원활한 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재철 이사가 대표이사로 적임자임을 설명하며 정재철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는다.

- 아 래 -

성명	대표이사 선임일	이사 선임기간	비고
정재철	2019.02.22	2018.02.23.~2021.2.22	

- ▶ 원치윤 이사 : 정재철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동의하다.
- ▶ 이태웅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는다.
-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 박성경 이사장: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정재철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재철 이사 : 그룹과 재단 근무를 비롯하여 사회공헌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김욱 관장이 이랜드 재단 국장으로 적임자임을 설명하다.

- 아 래 -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발령일자
이랜드재단 국장	김 욱		2019.3.1

- ▶ 박성경 이사장 : 김욱 관장의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는다.
- ▶ 원치윤 이사 : 김욱 관장의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에 대해 동의하다.
- ▶ 이태웅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이랜드재단 국장」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는다.
-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 박성경 이사장: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김욱 관장의 이랜드재단 국장 선임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 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선임 된 정재철 대표이사와 김욱 국장의 각오와 소감을 묻는다.
- ▶ 정재철 이사 : 대표이사로 이랜드재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직원에게 감사가 되며, 고객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답하다.

▶ 김 옥 국장 : 국장으로 이랜드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청지기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다.

<제 5호 의안> 상근임직원정수 승인의 건

- ▶ 박성경 이사장: 제5호 의안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의 건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재철 이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호에 의거하여 재단 상근 직원 정수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근직원 정수를 보고하다.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호

제5조(임원 등)제9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시행령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박성경 이사장 :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 원치윤 이사 : 원안에 대해 동의하다.
- ▶ 이태용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
-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 박성경 이사장: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6호 의안> 2019년 이랜드재단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 박성경 이사장: 제6호 의안 '2019년 이랜드재단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와 내용에 대해 정재철 이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재철 이사 : 재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단위 : 천원)

법인명	기정	추경	증감
이랜드재단	8,200,000	10,621,203	2,421,203

- ▶ 박성경 이사장 : 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 원치윤 이사 : 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다.

▶ 이태웅 이사 : 이에 재청하다.

▶ 박성경 이사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으로「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에 동의하다

▶ 박성경 이사장: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랜드재단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VI. 폐회선언

▶ 박성경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는 모든 안건이 적법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 위임하며 폐회 동의를 묻다.

▶ 원치운 이사 : 폐회 동의하다.

▶ 이태웅 이사 : 재청하다.

▶ 박성경 이사장 :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1시 40분



2019년 2월 22일

이사장 박성경



이사 이태웅



이사 원치윤



이사 정재철



감사 이천화

